#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57 발의연월일: 2021. 9. 14.

발 의 자 : 이수진(비) · 강민정 · 조오섭

민형배 · 정태호 · 황운하

민병덕 • 권인숙 • 최강욱

김주영 · 진성준 · 김영배

김경협 • 윤영덕 • 임종성

오기형 • 이성만 • 허 영

이수진 • 홍익표 • 유정주

어기구 · 김남국 · 강준현

장경태 • 윤준병 • 윤미향

유건영 · 심상정 · 김상희

이학영 · 김성환 · 서영교

안호영 · 송옥주 · 최인호

김승남・박 정・오영환

이동주 • 김수흥 • 박영순

강병원 · 고영인 · 한준호

김성주 • 이탄희 • 남인순

박홍근 • 이규민 • 양이원영

유동수 • 이용우 • 노웅래

의원(54인)

# 제안이유

탄소중립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이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의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표하는 등 경제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탈탄소·디지털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고탄소·노동집약 산업 등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면서 피해가 집중되는 산업과 지역, 근로자가 발생하여 실업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사회의 비전인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 등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 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 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 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노동전환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산업육성 및 전환정책 수립 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안 제7조).
-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과 관련하여 인력수요 동향 및 전 망, 직무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하여야 함(안 제8조).
-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 동전환분석센터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설치하고, 노동전환분석센터 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 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고용노동

부장관은 관련 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 자.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1)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 2)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이 노동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3) 대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4)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차. 노동전환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 조).
- 카. 이 법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 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노동전환 지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하 "탄소중립 이행"이라 한다)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노동전환 지원정책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노동전환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노동전환 지 원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제7조의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

- 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노동전환 지원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전환에 대응하여 새롭게 생기는 직무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업 내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 을 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노동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근로 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 한 사항
  -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 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 7.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노동전환 지원체계

- 제8조(인력수요의 전망 및 분석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 2.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 3.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 4. 근로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

급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9조(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분석센터를 둔다.
  - ②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 전환 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전환지원 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를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 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 3.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 4.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 · 교육 및 심리안정지원
  - 5.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한 노동전환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 ③ 노동전환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관계 기관간의 협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노동전환 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이나 변경 계획, 해당 사업의 예산이나 운영지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 및 변경 계획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장 노동전환 지원사업 등

제12조(노동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 8. 근로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9. 그 밖에 노동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근로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연합체 등(이하 "근로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12조의 노동전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의 기준과 대상 및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 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

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은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업 및 경제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제17조(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일반회계
  -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 제18조(보고·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전환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노동전환 지원센터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